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27555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1,470,934원 및 그 중 99,999,562원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7961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70,934원 및 그 중 99,999,562원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0283호, 2014하면602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2. 파산선고, 2015. 3.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위 가.항의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2. 9. 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지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소송절차의 진행 및 판결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환기시키면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다른 채권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서도 유독 원고만을 악의로 누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여 얻을 수 있을 만한 실익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